



보도자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 경제민주화·창조경제 구현

2015년 2월 17일(화) 배포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2015년 2월 23일(월)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2월 22일(일) 낮 12시 담당과장: 민혜영(044-200-4450)

담당: 박나연 조사관(044-200-4463)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 은행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19개 불공정 약관 시정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 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심사 의뢰받은 은행 약관· 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하여 19개 유형(은행 약관 13개 유형, 상호저축은행 약관 6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요청하였음.
 - * 은행 약관: 총 1,068건의 약관 중 34개 약관 조항(15개 은행) 상호저축은행 약관: 총 53건의 약관 중 8개 약관 조행상호저축은행중앙회 · 1개 저축은행)
 - ※ 은행법(제52조 제3항)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3)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 ·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 보고 받은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금융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1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1. 은행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항

가. 약관 조항

[종합자금관리서비스 이용 약관]

제12조 손해 배상 및 배상의 한계

- ② 고객 또는 은행이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법규의 위반 또는 이 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대방에게 배상하기로 합니다.
- 1. 은행은 고객이 은행에 납부한 과거 1년 간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하기로 합니다.
- 2. 고객은 제13조(분쟁해결절차) 또는 제14조(준거법및관할법원)에 의해 정한금액을 배상하기로 합니다.

나. 시정요청 사유

□ 은행의 고의·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은행은 고객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손해 배상은 실제 고객의 손해를 한도로 해야 함.

※ 민법

제750조(불법 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 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에 준용한다

제393조(손해 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은행의 귀책 사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고객이 은행에 납부했던 수수료 상당액에 한해서 손해 배상을 하기로 정한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함.

2. 은행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조항

가. 약관 조항

[폰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② 은행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 변경,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시정요청 사유

- □ 서비스 이용 계약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은 계약의 주된 급부로, 서비스의 중지·변경·제한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 따라서 약관에서 서비스 중지·변경·제한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
- □ 위 약관 조항은 사업자가 지의적인 판단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자·변경·제한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함.

3.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자의적인 추가 담보 요구 조항

가. 약관 조항

[외환거래약정서]

제8조 담보와 보증

거래처는 외환거래의 채무와 관련하여 은행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은행이 만족할만한 담보를 제공하며, 환율·금리 등의 변동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웁니다.

나. 시정요청 사유

- □ 고객에게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거나 담보 가치가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 까지 은행이 고객에게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음.
-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중 하나인 담보물 보충 청구권 발생 요건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362조**는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 하고 있음.
- ※ 민법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 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함.

4. 은행의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한 조항

가. 약관 조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약관]

제15조(거래 계약의 해지)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 1. 대리인이 출금계좌의 통장·인감을 제시하고 출금계좌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기타 관계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한 때

[외환거래약정서]

제11조 외국환거래약정의 취소 등

본인에게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의 기한전채무변제의무의 발생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이 약정서상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제2조에 의한 여신금액의 지출을 중지할 수 있기로 합니다.

나. 시정요청 사유

□ 계약의 해지·취소 등은 계약 당사자의 이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 비록 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그 사유를 약정하는 경우에도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 또한 타당해야 함.

○ 또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취소할 수 있어야 함.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도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일 전에 일정 기간을 부여하여 변제·압류 등의 해소를 최고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위 약관 조항들은 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거나, 계약 위반 사항에 그 시정을 최고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하여 고객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위 약관 조항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함.

5. 계약 연장 의사 표시 간주 조항

가. 약관 조항

[포페이팅 거래 기본약정서]

제5조(약정 기간)

본 약정의 약정기간은 _부터 _까지 1년으로 하며 이후에는 **일방 당사자가** 본 약정을 개정 또는 해지하겠다는 서면 통지를 약정 만기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된다.

※ 포페이팅(Forfaiting)거래: 무역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받을 장기 외상 채권을 은행(포페이터)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 판매하고, 은행(포페이터)은 매입한 외상 채권을 재매각하거나 채권 만기에 원리금을 받는 거래 방식임.

나. 시정요청 사유

□ 약관법 제12조 제1호 단서에서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단서에서 말하는 '고지'는 의사표시를 의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 별도로 하는 개별적 고지를 말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교부된 약관에 의한 고지는 해당되지 않음.(공정위 예규 제158호 '약관 심사 지침' 참조)

□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고객이 계약 만료일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2조 제1호에 해당함.

○ 계약 만료일 전까지 계약 만료일의 도래 사실 통지·계약 갱신 여부에 최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까지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계약이 유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임.

6. 은행의 고의 · 중과실을 불문하고 책임을 면제한 조항

가. 약관 조항

[펌뱅킹 서비스 이용계약서]

제6조 업무처리 일반

③ 은행은 이용기관이 전송한 거래지시 또는 자료 등이 착오, 오용, 유용,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에 의한 것이라도 은행은 그 처리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시정요청 사유

| 민법 | 제7 | 50조에 | 따라 | 은행의 | 고의·ɔ | 과실로 | 인하여 | 업무 | 처리 | 결과 |
|-----|----|------|-----|-----|------|------|-------|-----|------|----|
| 고객여 | 에게 | 손해가 | 발생히 | 였다면 | 은행은 | 손해 1 | 배상 책임 | 을 져 | 야 함. | |

| 위 | 약관 : | 조항은 . | 회사의 | 고의·과 | 실 여부 | 를 불등 | ₽하고 | 회사의 | 책임을 |
|---|------|-------|------|-------|-------|------|------|-----|-----|
| 베 | 제하고 | 있으므 | 그로 약 | 라법 제7 | 7조 제1 | 호에 천 | 채당함. | | |

7. 기타 약관 조항 유형

-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때 **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 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
- o 고객의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은행의 불이익 처분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
- 계약 기간 종료 후 대여 금고 입고품 · 보호 예수품을 저축은행의 판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
- 약관 변경에 고객의 **이의 제기 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한 조항

2 기대 효과·향후 계획

- □ 금융 약관은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불 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소비자들의 이의 제기**가 쉽지 않음.
 - 이번 시정으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공정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공정위는 이번에 시정된 은행, 상호저축은행 약관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약관, 여신전문금융 약관 등 금융 약관 전반을 지속적으로 심사하여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할 계획임.

※ <별첨> 1. 시정요청 은행 약관
2 시정요청 상호저축은행 약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시정요청 은행 약관>

① 은행의 손해배상액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항

가. 약관 조항

[통합자금관리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 손해배상 및 배상의 한계

- ② 고객 또는 은행이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법규의 위반 또는 이 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대방에게 배상하기로 합니다.
- 은행은 고객이 은행에 납부한 과거 1년 간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하기로 한니다.
- 2. 고객은 제13조(분쟁해결절차) 또는 제14조(준거법및관할법원)에 의해 정한금액을 배상하기로 합니다.

나. 시정요청 사유

□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고객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 를 한도로 하여야 함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에 준용한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은행의 귀책사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객이 은행에 납부했던 수수료 상당액에 한해서 손해배상을 하기로 정한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함.

② 은행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조항

가. 약관 조항

[폰뱅킹 이용약관]

제3조 서비스의 종류

② 은행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 변경,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시정요청 사유

- □ 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은 계약의 주된 급부로서, 서비스의 중지·변경·제한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 따라서 약관에서 서비스 중지·변경·제한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할 것임.
- 의 약관조항은 시업자가 지의적인 판단으로 서비스를 중지·변경·제한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함.

③ 은행의 자의적인 추가담보 요구 조항

가. 약관조항

[외환거래약정서]

제8조 담보와 보증

거래처는 외환거래의 채무와 관련하여 은행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은행이 만족할만한 담보를 제공하며, 환율·금리 등의 변동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웁니다.

나. 시정요청 사유

□ 고객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거나 담보가치가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까지 은행이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 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음.

- 저당물의 보충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362조*는 위 약관조항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 **민법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u>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u>** 저당물의 <u>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u>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 이는 예상치 못한 담보가치 하락의 위험을 오로지 고객에게 일방적 으로 전가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함.

① 일방적인 계약의 취소·해지 관련 조항

가. 약관조항

[외환거래약정서]

제11조 외국환거래약정의 취소 등

본인에게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의 기한전채무변제의무의 발생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이 약정서상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제2조에 의한 여신 금액의 지출을 중지할 수 있기로 합니다.

나. 시정요청 사유

- □ 계약의 해지·취소 등은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 계약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취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도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일 전에 일정기간을 부여하여 변제 또는 압류 등의 해소를 최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 □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함.

5 계약연장 의사표시 간주 조항

가. 약관 조항

[포페이팅거래 기본약정서]

제5조(약정기간)

본 약정의 약정기간은 __부터 __까지 1년으로 하며 이후에는 **일방 당사자가 본** 약정을 개정 또는 해지하겠다는 서면 통지를 약정 만기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된다.

※ 포페이팅(Forfaiting)거래: 무역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받을 장기외상채권을 은행(포페이터)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판매하고, 은행(포페이터)은 매입한 외상채권을 재매각하거나 채권 만기에 원리금을 받는 거래 방식임

- □ 약관법 제12조 제1호 단서에서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단서에서 말하는 '고지'는 의사표시를 의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 별도로 하는 개별적 고지를 말하고 계약체결시 교부된 약관에 의한 고지는 해당되지 않음.(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58호 「약관심사지침」 참조)
- □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고객이 계약만료일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갱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2조 제1호에 해당함.

○ 계약만료일 전까지 계약만료일의 도래 사실 통지 및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최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까지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계약이 유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임.

⑥ 고의·중과실 불문한 은행 면책 조항

가. 약관 조항

[펌뱅킹서비스 이용계약서]

제6조 업무처리 일반

③ 은행은 이용기관이 전송한 거래지시 또는 자료 등이 착오, 오용, 유용,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에 의한 것이라도 은행은 그 처리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시정요청 사유

| 민법 제750조여 | ∥ 따라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업무처리 ? | 결괴 |
|-----------|-------------------------------|----|
| 고객에게 손해기 | l 발생하였다면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

□ 위 약관조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약관법 제7조 제1호에 해당함.

7 은행이 일방적으로 통신수단을 결정하게 하는 조항

가. 약관조항

[은행간 결제서비스 웹사이트 이용약관]

제11조 통지

① 은행은 이용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회원이 은행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은행이 정한 통신 수단 중 **은행이 적당하다고 판단** 되는 통신수단을 이용합니다.

나. 시정요청 사유

□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하는 내용 중에는 계약상 중요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은행이 자의적으로 통신수단을 정하여 통지하게 된다면 중요한 사항을 통지받지 못한 고객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 위 | 약관 | 조항은 | 고객에게 | 부당하게 | 불리한 | 조항으로 | 약관법 | 제6조 |
|--------|-------|------|------|------|------|-----|------|-----|-----|
| 제2항 7 | सी1 उ | 호에 ह | 해당함. | | | | | | |

⑧ 변제자대위권 무상양도 조항

가. 약과조항

[외화거래약정서]

제9조 제3자의 변제 및 대위변제

② 연대보증인, 연대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은 변제 등에 따른 대위에 의하여 은행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은행과 본인간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은행의 동의없이 행사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은행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은행이 그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다음에 변제받기로 하며, 은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합니다.

나. 시정요청 사유

- □ 연대보증인 등과 같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대위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 및 담보권은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됨.(민법 제481조)
- 또한,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대위변제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민법 제483조 제1항)
- □ 위 약관 조항은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 권리를 은행의 청구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함.

[9] 담보권의 사적실행 사유·절차 등이 불명확한 조항

가. 약관 조항

[근질권설정계약서]

제8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② 제1항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실행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환가 방법 이외에도 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있기로 합니다. (후문 생략)

나. 시정요청 사유

- □ 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사적 절차를 통해 담보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 은행이 임의로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저평가 하거나 채무자가 채무액과 담보목적물 시가의 차액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담보물의 처분 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함.
- 예외적으로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음.
- □ 반면, 위 약관 조항은 **은행의 담보권 사적 실행 여부에 대한 재량** 범위가 넓게 인정되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함.
- 담보권의 사적 실행과 관련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채무자가 **그 요건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약관변경 절차 조항

가. 약관 조항

[전자무역업무 약관]

제14조 [약관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 영업점 또는 은행 홈페이지에 <u>1개월간</u> 게시하기로 한다.
- ②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약관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시정요청 사유

- □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지 않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점 게시만으로 갈음하는 등 계약을 변경하고서도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의 존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약관의 내용이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안내와 관련된 내용이 결여되어 있음.
- □ 특별한 필요와 목적으로 의사표현의 방법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고객의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가능해야 하는데, 위 약관 조항에 따르면 개인고객들의 경우 의사표시 방법이 제한되어 그 행사에 있어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음.
- □ 따라서, 위 약관조 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함.

🔟 고객의 이의제기 금지 조항

가. 약관 조항

[사이버브랜치 표준계약서]

제13조 (청렴계약조항)

③ "갑"은 청렴계약조항 이행과 관련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u>민형사상 일체의</u>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시정요청 사유

□ 기업고객과의 관계에서 청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계약관계를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적인계약관계에서 이의제기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측면**이 있음.

□ 위 약관 조항은 은행이 계약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계약상대방은 다툴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조항이므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함.

☑ 고객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 간주 조항

가. 약관 조항

[적립식 외화예금특약]

제10조 계약중도해지

예금주가 만기일전에 분할중도 인출 가능한 횟수인 5회(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3회)를 초과하거나 또는 1회에 3회차 납입금을 초과하여 지급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금 전체를 중도해지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좌를 전액해지해야 합니다.

나. 시정요청 사유

□ 예금의 인출 요청만으로 계약해지로 간주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들은 일정한 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2조 제1호에 해당함.

Ⅱ 관할 법원 조항

가. 약관 조항

[공제약관]

제4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은행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은행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시정요청 사유

□ 위 약관 조항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응소 및 제소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 으로 약관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함.

<별첨 2. 시정요청 상호저축은행 약관>

□ 저축은행의 자의적인 추가담보 요구 조항

가. 약관조항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담보) ① <u>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u> <u>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u>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곧 저축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나. 시정요청 사유

- □ 고객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거나 담보가치가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까지 은행이 고객으로 하여금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음.
-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중 하나인 담보물보충청구권 발생 요건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362조*는 위 약관조항보다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 **민법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 위 약관조항은 예상치 못한 경기악화의 위험을 오로지 고객에게 일방적 으로 전가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함.

② 추상적인 계약 해지 사유 조항

가. 약관 조항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제15조(거래계약의 해지)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 1. 대리인이 출금계좌의 통장·인감을 제시하고 출금계좌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기타 관계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한 때

- □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비록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경미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이고, 그 사유를 약정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할 것임.
- 또한 계약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어야 할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제·해지할수 있다고 할 것임.
- □ 위 약관 조항에서는 해지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계약 위반사항에 대하여 그 시정을 최고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상호저축은행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하여 고객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함.

③ 입고품 및 예수품의 임의처분 조항

가. 약관 조항

대여금고약관

제9조 (입고품의 임의처분)

약정기한 만료후 <u>상당기간이 경과할 때까지</u>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대여금고를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입고품을 임의반출하여 따로 보관할 수 있으며, <u>상호저축은행 형편 등에 비추어 입고품의 처분이 필요한</u> 경우에는 거래처에 대한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서 입고품 처분에 관한 통지 절차를 거쳐 처분합니다.

보호예수약관

제3조 (예수품의 임의처분)

계약기간 만료후 예수품의 반환 또는 갱신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저희 상호저축 은행은 임차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서 처분에 관한 통지 절차를 거쳐 처분하기로 하며**, 예수품 처분대금으로 모든 채권과 제비용의 변상에 충당하고 잔액은 공탁하기로 합니다.

나. 시정요청 사유

- □ 고객이 목적물의 반환 또는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권리실현은 민사법상의 절차에 의함이 원칙임.
- □ 위 약관 조항들은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의 청구가 없거나 대여금고의 명도 또는 입고품의 반환이 없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게 물건의 임의처분권을 부여하고 있어, 고객으로서는 불측의 과도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또한 대여금고약관은 약정기간이 끝나고 추상적으로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입고품을 임의반출하여 따로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상당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인지 고객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움.
- □ 따라서 위 약관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함.

④ 상호저축은행의 면책 범위 조항

가. 약관 조항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상호저축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제1항)
-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로서 일정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 □ 위 약관 조항은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고객이 모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이는 전자금융거래기본법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비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함.

5 약관 변경의 이의 제기 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한 조항

가. 약관 조항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약관의 변경)

-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u>서면에 의한 이의</u>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의 <u>서면에 의한 이의</u>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상호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나. 시정요청 사유

- □ 약관의 변경은 계약의 급부가 변경될 수 있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회원에게 이에 대한 사전 고지나 통보를 하여야 하며 특히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일 경우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하고 이의 제기 방법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
-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의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방식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거래가 전자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의 제기 방법을 서면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고객의 의사표시 수단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그러나 위 약관 조항은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 ·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약관법 제12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함.

6 이자 산정 시 윤년 고려 조항

가. 약관 조항

[(근)보증서]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2.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

<특정채무보증>

마. 지연배상금: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_%의 율로 <u>1년을 365일로 보고</u>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 위 약관 조항들은 대출이자 산정시 평년과 윤년을 구분하지 않고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함.
- 이에 따르면 1년이 366일인 윤년의 경우 고객은 평년에 비해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게 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함.